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 유)

제 목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변경 사항 및 법 적용대상 안내

1. 민원조사담당관-6093(2016.9.23.)의 관련입니다.

2. 위 호로 안내해드린 '16. 9. 22.자 청탁금지법 매뉴얼 수정 사항'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수정 사항을 반영한 '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매뉴얼(9.22.)'을 홈페이지에 수정 게시하였기에 [붙임1]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, 각급 기관(부서)에서는 소속기관 과 부설기관 등을 포함한 전 구성원에게 공유?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법 적용대상 구체화,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 범위 수정,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관련 기존 구체화

※ 변경된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(9.22.)은 용량 초과로 교육부 홈페이지 '청탁금지법 알아보기' 코너(www.moe.go.kr 국민참여?민원 >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> 자료실)에 게시

3. 또한, '16.10.12.자 연합뉴스 '경찰청 과장 부친상에 동료 직원 조의금 지급은 청탁금지법 위반' 보도와 관련하여, 국민권익위원회 해명자료(조직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비는 허용됨)를 [붙임2]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수정 게시된 매뉴얼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자 중 교원 등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

○ 고등교육법 및 초·중등교육법 관련 교원

구분	적용 대상	
대학 교원	고등교육법 제14조 따른 교원(총장, 학장, 교수, 부교수, 조교수)	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(석좌교수, 객원교수)
초·중등 교원 ※ 유치원 교원은 초·중등교원 준용	초·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(교장, 교감, 수석교사 및 교사)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	초·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

* 외국인 교수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의 경우 법 적용대상이나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의 경우 법 적용대상 아님

○ 각급 학교 중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

-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끝.

붙임 1. 청탁금지법 매뉴얼 변경 사항 안내 1부.

2.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구성원 간 경조사비 관련 보도 해명자료 1부. 끝.

교육부장관



각실과, 시도교육청, 고등교육기관전체, 대학법인

주무관 신소연 행정사무관 이홍복 민원조사담당관 전결10/17 이병석

협조자

수신

시행 민원조사담당관-7511 (2016-10-17) 접수 (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(여진동) / www.moe.go.kr

전화 044-203-6074 전송 044-203-6093 / sinso1209@moe.go.kr / 공개

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